

「2022년도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재취업 여성의 지속적 고용유지와 여성고용확대에 기여하고자 여성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「2022년도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I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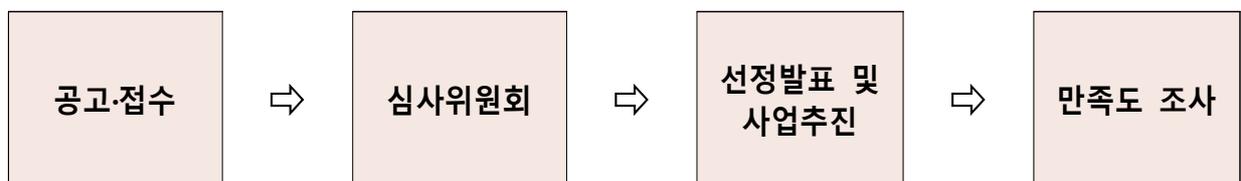
○ 사업 목적

-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으로 여성근로자의 지속적 고용유지와 여성고용 확대에 기여
-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여성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 생산성 향상

○ 사업 대상 : 새일센터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 (2개사)

○ 지원 규모 :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 (기업 당 5백만원 한도)

○ 사업 추진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○ 지원 내용 :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

《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용》

▶ 시설환경 대상

- 여성화장실, 여성 휴게실(수유실) 등
-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*
 - *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'근로자명부'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%이상인 업체에 한함 (단, 조선업 관련 산단, 공업 단지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 40% 이상 시 허용- 관련 증빙자료 철저히 구비)

▶ 물품구입

- 시설 환경 개선에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(단,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)

- 화장실(샤워실)에 필요한 수납장, 사물함, 온수기
- 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,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·난방기, 공기청정기, 유축(수유)기, 침대, 사물함(옷장), 탁자, 의자, 소파
-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
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(단, 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)

- 시설환경 개선에 따라 필요한 물품(상기 표 참조)
-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, 책상, 책장, 의자, 소파 등

II. 지원대상:

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중 아래 조건에 1개 이상 해당되는 2개 기업
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 - ※ 창업기업의 (공동)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, 창업동아리,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
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받은 중소기업
 - ※ 단,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에 한함
- 여성친화일촌기업(5인 이상 ~ 300인 미만)
 - ※ 단,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

○ 제외대상

- 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
(예 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)
-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,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
-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형제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
※ 단, 시도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가능
- 숙박, 음식 업종 사업체
※ 단,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,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-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·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
※ 'e나라도움 홈페이지-정보공시-'보조사업자 정보공시' 확인
-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
-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

III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2. 5. 16.(월) ~ 6. 30.(수) 18:00까지
- 선발심사 : 2022. 7. 4.(월) ~ 7. 15.(금)
- 선발공고 : 2022. 7. 19.(화) ~ 7. 22.(수) 예정
- 신청방법 : 이메일(saeil@hswf.or.kr) 접수
- 접수처 :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(유엔아이센터 3층)

IV. 제출서류

- ①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1부.
- ②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1부. (새일센터를 통한 창업기업용)
- ③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 1부. (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)

- ④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.
- ⑤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.
- ⑥ 환경 개선비용 및 구입 물품 견적서 1부.
(*별도서식 없음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업체)
- ⑦ 창업자의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 서류 1부. (* 해당 시)
- ⑧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(사본) 1부. (* 해당 시)

V. 심사방법

- 심사기준
 - 기업환경개선 사업 심사 기준표에 의한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 기업
 - 정규직 채용비율 및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 등
- 서면심사
 - 신청기업의 우선순위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
- 현장심사
 -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 계획시설 확인 및 점검
- 선정발표
 - 선정된 업체는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

VI. 유의사항

-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 처리함.
-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.
-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신청서나 각종 증명(빙)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함.
- 기타 사항은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(031-267-8794~5)로 문의.